

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:









- 교육 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
- 임금 이상을 받고,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 (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격주)
- 임금 공제액을 알고 사전 서면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
- 차별, 성희롱 및 학대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
-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뉴욕주 노동부에 도움을 청할 권리

자신을 보호하십시오!

기록 보관

- 일한 날짜와 시간
-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
- 직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(부상, 위협 또는 충돌)의 일시 및 보고 대상



강제 노동은 범죄입니다!

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일 수

있습니다:



-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함
- 고용주가 여권이나 신분증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함



• 영주권이나 금전 등 본인이 받지 않은 혜택을 약속한 경우



•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민국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 당한 경우



•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이라고 위협 당한 경우

•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

귀하의 권리 및 이용 가능한 도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전국 인신매매(National Human Trafficking) 응대 24시간 핫라인(888.373.7888) 또는 DOCE 핫라인 (877.466.9757)으로 문의하십시오.

이메일(trafficking@labor.ny.gov)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888-469-7365 | **f** → **1 in 1 2 2 2 3 3 3 3 4 3 3 3 4 3 3 4 3 3 4**

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/프로그램입니다. 보조 보조원 및 서비스는 장애인 TTY/TDD 7/11 또는 1-800-662-1220(영어) / 1-877-662-4886번으로 요청 시 무료 제공됩니다.